

-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-

---

##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계획

2026. 1.



**장애인복지과**

# 요 지

## 1.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
- 「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」 제18조(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)
- 제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기본계획(장애인복지과-299. '24.1.4)

## 2. 추진배경

-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시설 퇴소자에게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
-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 유도

## 3. 세부추진계획

- 지원금액 : 1인당 10백만원(시비 50%, 구비 50%), 1회에 한함
- '26년 지원규모 : 10명
- 지원대상 : 아래 기준을 충족한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, 자립을 목적으로 인천소재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  - ① 장애인 유형별, 중증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    - ※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  - ②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  - ③ 인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피해 장애인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자립 준비를 위하여 자립생활 체험시설\* 에서 자립역량을 향상 시킨자로 시설 퇴소 시에 지급
    - \* 단기자립생활주택, 자립생활주택, 자립주택 6개월 이상 거주
    - ※ 소득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
  - ④ ①②③에서 시설이나 자립(생활)주택 퇴소 시 지원금 지급이 원칙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주택 입주일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## 4. 향후계획

- 2026년 사업 안내(군·구 및 거주시설) : '26. 1. 31.한

## -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-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계획

- ❖ 시설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의지 고취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모

### I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5조(장애 유형·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)
- 「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」 제18조(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)
- 제2차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5개년 계획(장애인복지과-299호, '24.1.4.)

### II 추진배경

-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추어 시설 퇴소자에게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
- 자립 목적으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 유도
- “보건복지부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” 추진('22~'26)에 따른 자립장애인 확대

### III 추진경과 및 지원현황

#### □ 추진경과

- 2014년 초기정착금 최초 지원 : 1인 5백만원
- 2018년 초기정착금 지원 상향 : 1인 5백만원 → 6백만원
- 2019년 초기정착금 지원 상향 : 1인 6백만원 → 8백만원
- 2024년 초기정착금 지원 상향 : 1인 8백만원 → 10백만원

## □ 지원현황

(단위 : 명/ 백만원)

| 연도   | 인원           | 금액 | 연도   | 인원 | 금액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|
| 2014 | 3            | 15 | 2020 | 13 | 104 |
| 2015 | 5            | 25 | 2021 | 8  | 64  |
| 2016 | 8            | 40 | 2022 | 10 | 80  |
| 2017 | 5            | 25 | 2023 | 16 | 128 |
| 2018 | 10           | 60 | 2024 | 6  | 60  |
| 2019 | 9            | 72 | 2025 | 3  | 30  |
| 총 계  | 96명 / 703백만원 |    |      |    |     |

## IV

## 세부추진계획

## □ 2026년 변경(추가)사항

| 내용   | '25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6년도 변경(추가)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원대상 | 아래 기준을 충족한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, 자립을 목적으로 인천소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좌동)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① 장애인 유형별, 중증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<br>※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(좌동)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②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좌동)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③ 인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폭력 및 학대등으로 피해 장애인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자립 준비를 위하여 자립생활 체험시설* 에서 자립역량을 향상 시킨자로 시설 퇴소 시에 지급<br>* 단기자립생활주택 자립생활주택 자립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<br>※ 소득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 | ③ (좌동)<br>-----<br>----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①②③에서 시설이나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금 지급이 원칙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을 통해 주택 입주일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|

### < 변 경 사 유 >

- ▶ 기존 초기정착금 지급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지급되고 있어 주택 보증금 마련과 같이 선행되어야 하는 지출에 사용되기 어렵고
- ▶ 초기정착금 사용목적이 임차보증금, 생활용품 구입 등 초기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, 지출이 가장 필요한 주택 계약 시점에는 사용할 수 없어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실질적 어려움이 있음
- ▶ 따라서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이 그 취지에 맞게 자립초기에 발생하는 주택 보증금 등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함
- ▶ 일부 타 시도(서울, 대구, 제주 등)에서 이미 퇴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될 경우 퇴소 이전에도 지원 가능 명시함

### □ 지원내용

- 지원금액 : 1인당 10백만원(시비 50%, 군·구비 50%), 1회에 한함
- '26년 지원규모 : 10명
- 지원대상 : 아래 기준을 충족한 19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, 자립을 목적으로 인천소재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
  - ① 장애인 유형별, 중증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
    - ※ 소득 기준 적용하지 않음
  - ② ①의 전제조건을 충족한 자로서, 시설에서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,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은 자립주택 퇴소 시에 지급
  - ③ 인천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폭력 및 학대 등으로 피해 장애인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자립 준비를 위하여 자립생활 체험시설\*에서 자립역량을 향상 시킨자로 시설 퇴소 시에 지급
    - \* 단기자립생활주택, 자립생활주택, 자립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
    - ※ 소득기준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
  - ④ ①②③에서 시설이나 자립(생활)주택 퇴소 시 지원금 지급이 원칙이나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주택 입주일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

○ 지원 제외 대상/환수 대상

- 시설 퇴소 후 공동생활가정 입소자 및 단순 가정 복귀자
- 타 시·도 거주시설에서 우리 시 자립생활주택 또는 자립주택에 입소한 후 퇴소한 자
-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자립생활주택 및 자립주택 입소 후 퇴소 시
- 초기정착금 수령 후 2년 이내 원가정 복귀 또는 시설로 재입소하는 시 반납
- 1회 이상 자립정착금 지원 받은 자(인천광역시, 타 지자체 포함)
- 자립생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
- 허위,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립정착금은 전액 환수 조치

○ 사용용도 : 임차보증금, 생활용품 구입 등 자립에 필요한 자금

○ 지급기준 : 퇴소일 순으로 지급

※ 퇴소자가 많을 경우는 입소기간, 장애정도 순으로 우선 지급(심한장애 우선)

○ 지급방법 : 군·구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

## □ 신청방법

○ 신청절차 : 시설 퇴소 장애인 → 관할 군·구 → 市

○ 신청기한 : 퇴소 후 6개월 이내

○ 신청방법 :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군·구 장애인업무 부서에 신청서 제출

○ 신청서류

- (서식1)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(시설 퇴소 장애인)
- (서식2)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1부 (최종 퇴소시설장 확인)
- (서식3) 거주시설 퇴소증명서 1부 (퇴소 거주시설장 확인)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(피해장애인쉼터 퇴소자)
- 자립 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

- 2026년 사업 안내(군·구 및 거주시설) : '26. 1. 31.한
- (군·구) 초기정착금 지급대상 검토
  - 지원기준 적합 및 단순 가정복귀 여부 등 확인(출장복명서 첨부)
- (市) 보조금 지급 : 신청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급
- (군·구→市) 보조금 정산
  - ※ 군·구 : 정착금 지원 사항 행복e음 입력 및 시설퇴소 장애인 사례관리 철저